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요구 신설 등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20호)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51호)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780호)
- 김 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836호)

2024.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2 |
| III . 검토의견 .....                                        | 5 |
| 1. 국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요구 신설 등(안 제19조제1항<br>제7호 신설 등) ..... | 5 |

## I . 제안경위

### 【이훈기의원안】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5인

나. 발 의 일 : 2024. 7. 11.

다. 회 부 일 : 2024. 7. 12.

### 【한준호의원안】

가. 발 의 자 : 한준호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4. 7. 15.

다. 회 부 일 : 2024. 7. 16.

### 【최민희의원안】

가. 발 의 자 : 최민희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 2024. 7. 16.

다. 회 부 일 : 2024. 7. 17.

### 【김현의원안】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4인

나. 발 의 일 : 2024. 7. 17.

다. 회 부 일 : 2024. 7. 18.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이훈기의원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운영과 직무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에 해당 되는 동시에,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성을 인정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견제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하여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 【한준호의원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우 심의 업무의 공공성, 파급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 근거 규정이 부재하여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 **【최민희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인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상임위원은 호선하도록 함.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가 추천하여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되도록 하는 한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해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후단 및 제20조의2 신설 등).

### **【김현의원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장은 그 업무의 중요성이 크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도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심의위원장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 신설 등).

### Ⅲ. 검토의견

#### 1. 국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 요구 신설 등(안 제19조 제1항제7호 신설 등)

##### 가. 주요 내용

- 4건의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심의위원 또는 심의위원장에 대해서 국가가 해촉을 요구하거나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 이훈기의원안은 방심위의 심의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심의위원의 결격사유에 이러한 절차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 한준호의원안은 방심위의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고,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가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최민희의원안은 방심위의 심의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가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해촉된 사람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며, 방심위의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 또는 국회상임위원회의 추천으로 위촉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려는 것임.

- 김현의원안은 국회의장 및 국회상임위원회 추천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14일 이내에 위촉하도록 하면서, 방심위원 및 방심위원장에 대해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과 유사하게 규정하여, 방심위원 3인을 상임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경우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며, 심의위원장은 방통위원장과 동일하게 국무회의 출석, 국회 출석 및 탄핵소추의 근거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

### 【이훈기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br>1. ~ 6. (생략)<br><u>&lt;신설&gt;</u><br>② (생략)<br><u>&lt;신설&gt;</u> | 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br>-----<br>-----<br>1. ~ 6. (현행과 같음)<br>7. <u>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u><br>② (현행과 같음)<br><u>제20조의2(심의위원에 대한 해촉요구 등) ①</u> 국회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br><u>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받은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u> |

| 현 행 | 개 정 안                                                                             |
|-----|-----------------------------------------------------------------------------------|
|     | <p>한다.</p> <p>③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

### 【한준호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 ⑤ (생략)</p> <p>⑥ <u>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⑦ (생략)</p> <p><u>&lt;신설&gt;</u></p> | <p>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 ⑤ (현행과 같음)</p> <p><u>&lt;삭제&gt;</u></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8조의2(심의위원장) ① <u>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u></p> <p>③ <u>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④ <u>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p>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⑤ ~ ⑦ (생 략)</p> <p>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p> <p>1.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② (생 략)</p> <p><u>&lt;신 설&gt;</u></p> | <p>⑤ ~ ⑦ (현행과 같음)</p> <p>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br/>-----<br/>-----.</p> <p>1. ~ 6. (현행과 같음)</p> <p>7.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해촉된 사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0조의2(심의위원에 대한 해촉요구 등) ① 국회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받은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결과와 사유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국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

### 【김현의원안】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생 략)</p> <p>② <u>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u></p> | <p>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u>&lt;삭 제&gt;</u></p> |

| 현행                                                                                                                                                                                                                                                                                                                                                                                                                                                                                                                                                 | 개정안                                                                                                                                                                |
|----------------------------------------------------------------------------------------------------------------------------------------------------------------------------------------------------------------------------------------------------------------------------------------------------------------------------------------------------------------------------------------------------------------------------------------------------------------------------------------------------------------------------------------------------|--------------------------------------------------------------------------------------------------------------------------------------------------------------------|
| <p>(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p> <p>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p> <p>④ 심의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⑤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⑥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lt;신설&gt;</p> |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lt;삭제&gt;</p> <p>제18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p> | <p>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심의위원을 상임(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② 상임위원 3인은 호선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8조의3(심의위원의 위촉 등) ① 심의위원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지명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인</li> <li>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는 3인</li> <li>3.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li> </ol> <p>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이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촉하여야 한다.</p> <p>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제18조의4(심의위원장) ① 심의위원장은</p> |
| <p>&lt;신설&gt;</p> |                                                                                                                                                                                                                                                                                                                                                                                                                                                                                                                                                                                                                                                                                   |

| 현행                                                                                                                                                                                                            | 개정안                                                                                                                                                                                                                                                                                                                                                                                                                                                                                                                                                                                                   |
|---------------------------------------------------------------------------------------------------------------------------------------------------------------------------------------------------------------|-------------------------------------------------------------------------------------------------------------------------------------------------------------------------------------------------------------------------------------------------------------------------------------------------------------------------------------------------------------------------------------------------------------------------------------------------------------------------------------------------------------------------------------------------------------------------------------------------------|
| <p>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p> <p>1.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또는 <u>판사의 경우</u>는 제외한다.</p> | <p><u>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사무를 통할한다.</u></p> <p>② <u>심의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u></p> <p>③ <u>심의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u></p> <p>④ <u>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심의위원회가 미리 정한 심의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⑤ <u>국회는 심의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u></p> <p>제19조(심의위원의 결격사유) ① ----<br/>-----<br/>-----.</p> <p>1. -----<br/>-----<br/>-----.<br/>-----<br/>-----<br/>-----<br/>-----<br/>-----<br/>-----판사 및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이</p> |

| 현 행                               | 개 정 안                                                                      |
|-----------------------------------|----------------------------------------------------------------------------|
| 2. ~ 6. (생 략)<br><신 설><br>② (생 략) | 된 사람은-----.<br>2. ~ 6. (현행과 같음)<br>7. <u>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u><br>②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 의견

-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sup>1)</sup>는 제1항에서 방심위를 두도록 하고, 제2항에서는 방심위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심의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되, 9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18조제1항은 방심위의 기능과 법적근거로, 방심위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됨을 규정하고 있고, 그 성격은 민간독립기구임.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의 위원을 상임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경우 3인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위촉하고, 3인은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

○ 현행법은 방심위원회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위원장과 다르게 법에서 별도의 탄핵소추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이는 헌법 제65조가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으로 탄핵소추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방심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으로 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임.

- 방통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법 제6조제5항2)에서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은 법 제10조제1항제4호3)에 따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우선, 4건의 개정안은 방심위가 민간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방심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도 국회에 의한 견제를 받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발의된 것으로, 방심위원이나 방심위원장이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는 국회가 해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이훈기의원안)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한준호·최민희·김현의원안)하여 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4.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 ①이훈기의원안은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도록 하며, 이 경우 해촉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하고,
  - ②한준호의원안은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방심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을 규정하는 것이며,
  - ③최민회의원안은 이훈기의원안과 같이 심의위원에 대하여 국회가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은 이를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 ④김현의원안은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 방심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을 신설하려는 것임.
- 방심위 위원 또는 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해촉 요구 또는 탄핵소추 권한을 신설하려는 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사회적 영향력과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심의위원 등에 대한 국회의 견제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첫째, 방심위가 실질적으로 국가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독립기관이라는 정체성으로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둘째, 헌법재판소 역시 방심위는 행정기관에 해당하고<sup>4)</sup>,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으며<sup>5)</sup>, 심의 업무의 공공성·과급성 등을 고려할 때 방심위의 사회적 영향력과 책임이 크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셋째, 방심위의 업무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방송사업자 중 JTBC는 법률에서 심의위원의 면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체계상 합당하나, 방심위원 해촉요구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

- 방송·통신 심의업무의 사회적 역할과 중대성이 큰 만큼 숙의를 거쳐 엄정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찬성’ 의견을 제시 하였음

---

4) “(1) 심의위원회가 행정기관인지 여부

...심의위원회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제18조제1항),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제18조제3항, 제7항), 별도의 기금 이외에 국고에서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8조). 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외에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 등을 할 수 있고, 심의규정의 제정 및 공표를 하며,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제21조, 제24조, 제25조).

이와 같이 심의위원회의 설립, 운영, 직무에 관한 내용을 종합하면, 심의위원회를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판례집 24-1(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 p.33.).

5) “행정기관인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는...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 「판례집 24-1(상)-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 p.35.).

- 현행법은 방심위를 구성하는 심의위원들의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데,  
 방송·통신 심의 업무의 사회적 중대성과 책임성을 고려했을 때, 심의위원이 그 직을 수행함에 있어 중대한 흠결이 있다면 면직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한 절차와 기준이 마련되는 것이 법체계상 합당하다는 입장임.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를 민간독립 심의기구로 한 것은 국가기관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방심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 근거를 신설하는 2건의 개정안(한준호·김현의원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고,  
 국회의 해촉 요구권 및 이에 대한 대통령의 원칙적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2건의 개정안(이훈기·최민희의원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방심위 역시 대통령의 해촉권과 국회의 해촉 요구권이 충돌하는 영역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해 방심위가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도,  
 국회의 해촉 요구권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히, 대통령이 위촉하는 3인의 심의위원과 관련하여, 국회의 해촉 요구 및 이에 대한 대통령의 원칙적 준수 의무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다음으로, 방심위 상임위원<sup>6)</sup> 또는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2건의 개정안(김현·한준호의원안)에 대해서는, 방심위원장 업무의 중요성이 크고 상임위원이나 방심위원장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방심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려는 것은 헌법 제65조제1항<sup>7)</sup>이 탄핵소추의 대상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른 것으로 보임.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심의위원을 제외하고 상임위원(김현의원안) 또는 방심위원장(한준호의원안)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방송 내용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여 방송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한 입법취지에 반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심의위원과 균형에 맞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필요 입장임.

6) 김현의원안은 방심위원 9인 중 3인을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도록 하고 있음.

7)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역시 민간기구에 정무직공무원을 둔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필요 입장을 제시하였음.
- 방심위 역시 상임위원 또는 심의위원장만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고,  
심의위원장만 정무직 공무원에 보하는 것은 방심위를 민간독립기구로 설립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에서 발의된 것으로 신중 검토 입장임.
- 다음으로, 방심위원장을 국회의장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최민회의원안에 대해서는, 방심위 업무 수행의 책임성 및 정치적 중립과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는 현행법상 방심위원장을 9인의 위원이 호선하도록 한 취지는 방심위 활동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방심위원장이 될 수 있는 대상을 국회가 추천한 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은 합의제 기구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형평에도 반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방심위 역시 9인의 심의위원 가운데 국회의 추천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위촉한 3인의 심의위원에 대해서만 심의위원장으로 호선될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 검토 입장임.

- 이상의 쟁점 법안 내용 중 이훈기·최민희의원안에서 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이 개정안의 내용과 유사한 입법례로 「국회법」 제84조제2항<sup>8)</sup>은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에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공무원법」 제79조<sup>9)</sup>에 징계의 종류로 파면과 해임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서 “심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한정하여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게 해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회법」 제84조제2항의 결산 심사 결과 시정조치 요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8)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 이에 따라 개정안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에 해촉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사 입법례를 고려했을 때 그 내용이 위헌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며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봄.

○ 다음으로 한준호·김현의원안 중 방심위원장 또는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면서 방심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을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방심위의 성격 변경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방심위원장 또는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하면서 방심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권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임.

- 다만 행정안전부의 의견과 같이 민간기구에 정무직 공무원을 보한 사례가 없음을 감안할 때, 방심위의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성격을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sup>10)</sup>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

10)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정기관<sup>11)</sup>으로서의 위원회라는 성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같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1항<sup>12)</sup>에 따라 법률로 설치하게 되어있고 동조제2항 각 호의 하나로 반영되어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정무직 공무원인 방심위원장 또는 방심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촉이 아닌 임명을 하게 되므로 조문 정리가 필요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해보면, 4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직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의 견제수단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 및 방심위는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방심위의 시정요구가 처분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입장 등과 함께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관점에서 문제가 있고, 방심위가 민간독립기구로 규정된 입법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방통위와 방심위 등의 신중 검토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은 장관급)와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차관급)가 있음.

12)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
|--------------|
| 문 의 처        |
| 02)6788-5226 |